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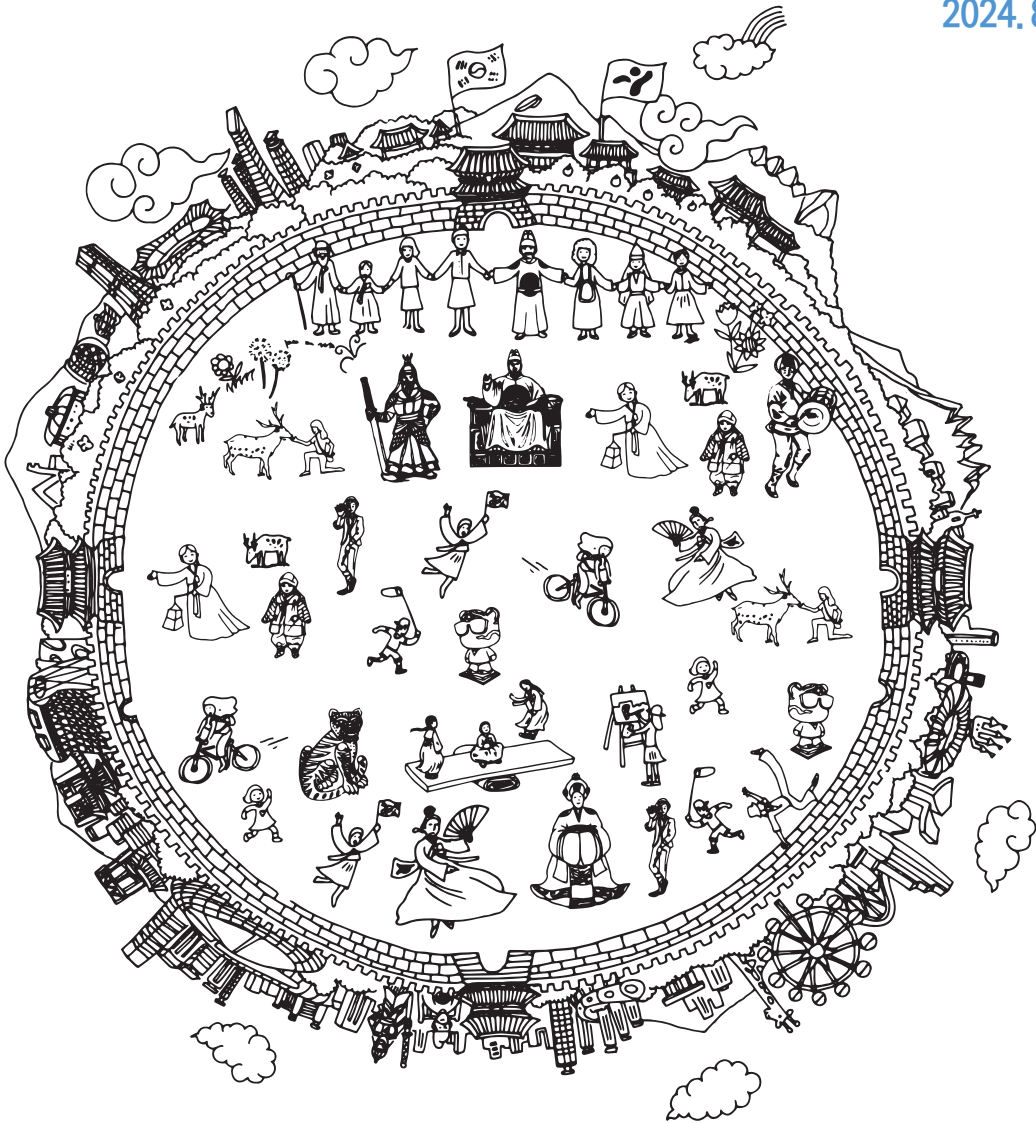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97호
2024. 8. 5.(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64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648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464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
제4650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
제4651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6
제4652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3
제4653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4
제4654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7
제4655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0
제465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5
제4657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8
제4658호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1

[예 규]

제737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	143
-------	------------------------	-----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4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별표의 기후환경본부 표 중 자원순환과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구청장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의 2부터 제6호의3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구청장

별표의 문화본부 표 중 문화예술과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별표의 시민건강국 표를 삭제한다.

별표의 행정국 표 주관부서란 중 “남북협력과” 를 “평화기반조성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규칙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재위임 종료 사무 정비
 - 마약류에 관한 사무,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사무 삭제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 다.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 서울특별시규칙 제4648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제1조 중 “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치구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심사 후”를 “투자심사 후”로,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심사”를 “투자심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5조 중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3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20퍼센트”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제1항제5호”를 “영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가능한지 여부”를 “가능한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사업의 명칭·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제8조제1항제1호 중 “적정:사업”을 “적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건부추진:사업”을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검토:사업”을 “재검토: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정:사업”을 “부적정: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업의 타당성”을 “사업의 타당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제정”을 “시제정”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기관)”을 “(타당성조사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한 타당성조사는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타당성 조사 절차)”를 “(타당성조사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의2”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자”를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로,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타당성조사 의뢰서”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를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타당성 조사는”을 “타당성조사는”으로, “타당성 조사과제”를 “타당성조사 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의2”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을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제1항”으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조사”로, “「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2. 자치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투자심사 대상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타당성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
 2.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8호”를 “영 제64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9조 중 “매년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제3조)
- 나. 타당성조사 결과 검증 대상과 제외 대상 규정 (제14조)
- 다. 규칙 내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용어 정비, 자구 수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64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제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생활지원센터” 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버스요금 지원 대상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버스요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본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에게 각각 월 5만원, 제1항제2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에게 월 5만원을 한도로 다음 각호의 요금을 지원한다.

1.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이용요금
2.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환승요금
3.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환승요금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5. 서울시 리버버스 이용요금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23.7.18.)으로 장애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함.

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 신설(제9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에게 각각 월 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본인에게 월 5만원을 한도로 버스요금을 지원함.
- 서울버스 이용요금, 인천·경기버스 환승요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서울시 리버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650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을 적용하여 조례 제7조제1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 라 한다)를 작성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 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을 “이 규칙”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초안 20부와” 를 “초안과 그”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 평가서초안” 을 “공고하여, 평가서 초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서” 를 “평가서” 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및 평가서 초안의” 를 “초안 및”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평가서초안” 을 “평가서 초안” 으로, “승인기관장등” 을 “승인기관의 장”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승인기관장등” 을 “승인기관의 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승인기관장등” 을 “승인기관의 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기관장등을 주관구청장으로 본다” 를 “준용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 을 “주관구청장” 으로 본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서” 를 “평가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회의진행” 을 “회의 진행”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반영여부” 를 “반영 여부” 로, “승인기관장 등” 을 “승인기관장등” 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 조례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활한 평가서 작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에 걸치는”을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걸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승인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사업개요, 공청회”를 “사전에 주관구청장과”로, “장소 등을”을 “장소, 사업개요, 주재자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로 “일간신문”을 “이를 일간신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활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거치지 아니”를 “생략”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견수렴 절차를”을 “의견 수렴 절차를”로, “의견수렴 절차에”를 “의견 수렴 절차에”로, “거칠 것”을 “거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사업규모가 3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을 “제9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란”으로,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을 제작성하여 의견 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를 “경우를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제작성하여 의견 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을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으로, “대상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주민의견”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으로, “첨부하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견수렴”을 “의견 수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관 구청장은 주민”을 “주관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승인기관장”을 “승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평가서 20부”를 “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8조에서 정한 사항을”을 “영 제48조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위원회의”를 “조례 제2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업계획 등”을 각각 “사업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협의 내용”을 “협의내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조례 제15조에 따라 건축”을 “건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된 규모가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 다만, 조례 별표 1 제1호자목의 경우에는 해당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2.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협의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에 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승인기관의 장”을 각각 “승인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의 통보를 승인 등을”을 “등을”로, “하여야”를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 제목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22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한”을 “긴급하거나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평가서 등의 공개)”를 “(평가서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평가서초안, 제작성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을 “평가서등(제작성된 평가서 초안 포함)”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공사기간” 을 “협의내용 관리기간”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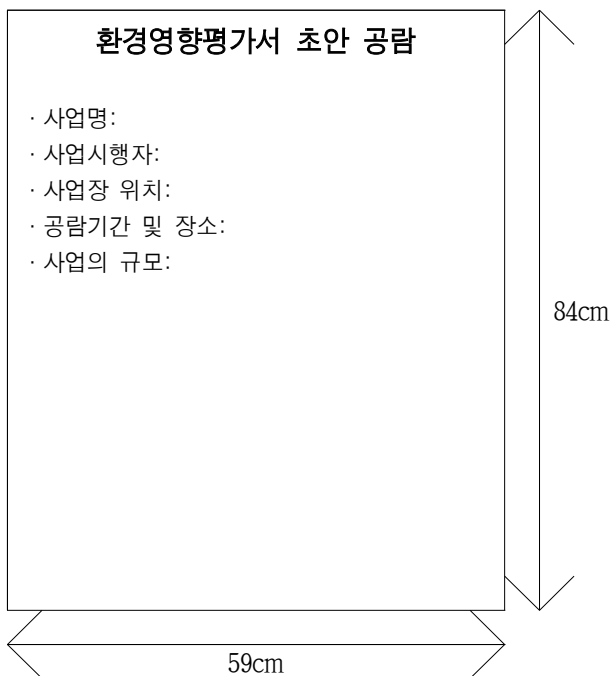
평가서초안 공람 방법 중 공고판 게첨 방법 등(제4조 관련)

가. 게첨 방법

구분	게첨 수	게첨내용	게첨위치 등
조례 별표 1의 대상사업 범위 중 면적 및 시설용량 사업	4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사업장 위치 · 공람기간 및 장소 · 사업의 규모	사업장부지 경계 벽면 네 방향에 고정하여 설치(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힌 벽면 제외)
조례 별표 1의 대상사업 범위 중 길이 사업	사업장 경계길이를 500(m)으로 나누어 올림한 수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사업장 위치 · 공람기간 및 장소	사업장 경계 500m 간격으로 설치

※ 날씨 등의 영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게첨 규격



－ 규격: 가로(59cm) × 세로(84cm) *A1 규격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 재수렴 신청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 제수령 신청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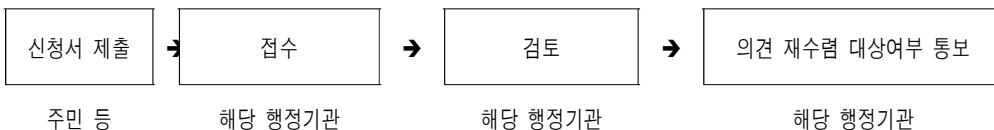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의견 재수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있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자료 2. 최소 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를 활성화하고, 변경협의 대상을 완화하며, 평가서 초안 공람 시 공고판 게첨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제출 부수(20부) 삭제(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4항)

라.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때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요건을 정비함(제15조제3항제1호, 제2호)

－ ‘최종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협의내용 변경 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건을 완화함.

바. 평가서 초안의 공고판 게첨 기준을 완화함(별표 1)

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 서식의 ‘공사기간’을 ‘협의내용 관리기간’으로 수정함(별지 제7호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651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국가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자연유산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3항과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유산 보존의 기반조성

제3조(국가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기초조사를 하려

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위,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국가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기초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은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국가유산의 조사·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국가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국가유산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국가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내용을 시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①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지정유산 중 목조건축물
2. 시지정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예방활동
2. 화재 발생 시 신고요령
3. 화재 발생 시 국가유산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제4장 시지정유산 등의 지정

제6조(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지정유산의 지정절차) ①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시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지정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 중 해당 분야의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국가유산이 시지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하되,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인위적·자연적 조건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① 시지정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시지정유산등”이라 한다)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등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
3. 시지정유산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11조(지정에 관한 자료) 시지정유산등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지정유산등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시지정유산등의 작자·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시지정유산등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7. 시지정유산등의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8. 시지정유산등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정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기념물·민속문화유산·자연유산·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은 시지정유산등의 지정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해제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1.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지정 해제
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범위의 조정

제14조(임시지정) 시장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기념물·민속문화유산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5장 시지정유산등의 관리와 보호

제15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지정유산등에 대하여 자치구나 해당 시지정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할 경우에는 해당 시지정유산등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시지정유산등의 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지정유산등의 대장에는 지정번호별 찾아보기와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른 임시지정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허가신청) ① 조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해당 시지정유산등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9조제1호에 따른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8호서식

2. 조례 제19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
3. 조례 제19조제3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
4. 조례 제19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별지 제11호서식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을 따르고, 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을 따른다.

제18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조례 제19조제3호 단서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
2. 벽화가 없는 벽체의 탈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일부 탈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3. 창호지를 바르거나 일부 파손된 문짝을 보수하는 행위
4.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천장에 흙을 바르는 행위
5. 마루판의 부분적인 파손을 보수하는 행위
6.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보수하는 행위
7. 누수방지를 위하여 이완된 기와를 바로잡는 행위
8. 화장실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9.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10. 광장의 유실부분을 보수하는 행위
11.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12. 석축부분의 흙을 고르는 행위
13. 기존 진입도로를 유지보수하는 행위
14.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15. 성곽 및 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6.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7.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8. 보호책을 보수하는 행위
1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행위

제19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시지정유산등에 관하여 조례 제2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3조제1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별지 제12호서식
2. 조례 제23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 변경 신고: 별지 제13호서식
3. 조례 제2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시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보관 장소의 변경 신고: 별지 제14호서식
4.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 별지 제15호서식
5. 조례 제23조제7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재반입 신고: 별지 제16호서식

6. 조례 제23조제8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 별지 제17호서식
 ② 시지정유산등에 관하여 조례 제23조제9호에 따른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반출의 경우 반출예정일 1개월 이전에, 재반입의 경우 재반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등의 시외반출 신고: 별지 제18호서식
2. 시지정유산등의 재반입 신고: 별지 제19호서식

제20조(수리 등의 시행통지) 시장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 부담으로 조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시지정유산등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 내용·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지정유산등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지정유산등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제6장 시지정유산등의 공개

제22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지정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지정유산등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시지정유산등이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시지정유산등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지정유산등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지정유산등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지정유산등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지정유산등의 보호·보존을 목적으로 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시지정유산등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

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시 소유 국가유산 운영

제24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휴무일) ① 시 소유 국가유산 및 관련시설(이하 “시 소유 국가유산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주 하루를 휴무일로 한다.

② 휴무일은 시 소유 국가유산별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5조(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관람 또는 사용시간) 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관람 또는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람 또는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제26조(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관람 또는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관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 소유 국가유산등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집회 또는 종교행사

3.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제27조(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촬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촬영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촬영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경우에는 허가 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촬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3조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경우에는 허가 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소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촬영 허가 또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사용일 이후에는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시 소유 국가유산등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자치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 발굴, 보존 및 전승을 위한 행사나 촬영

2. 국정, 시정의 홍보와 전통문화 교육목적을 위한 행사나 촬영

3. 정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전시 등의 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글짓기, 그림 그리기, 서예 등의 행사 또는 공익목적의 행사
 5. 해당 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 제28조(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제27조에 따라 시 소유 국가유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국가유산 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설치·철거 및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2. 물품 및 장비의 반·출입 및 행사용 차량의 출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국가유산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 ② 시장 또는 국가유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내용과 허가조건 또는 준수사항을 변경·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4.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전 협의에 의하여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29조(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30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 신청)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운영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기간의 연장 등) 수탁자가 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실적 등을 첨부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운영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운영규정) 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 제33조(분과위원회) ① 국가유산을 분야별로 분장하여 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건축유산분과위원회
 2. 동산유산분과위원회
 3. 기념물·자연유산분과위원회
 4. 표석분과위원회
- ② 건축유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7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7조제2호의 기념물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7조제3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 및 조례 제8조의 문화유산자료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7조제4호의 자연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5. 설비·전기·기계 등 기술에 관한 사항
 - ③ 동산유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7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7조제3호의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8조의 문화유산자료 중 전적, 서적, 문서, 회화, 조각 및 공예품 등에 관한 사항
 - ④ 기념물·자연유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7조제2호의 기념물(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의 문화유산자료(건조물, 전적, 서적, 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44조제1항의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의 경우, 지표조사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명령 심의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7조제4호의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 ⑤ 표석분과위원회는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별 정원 및 위원의 배치는 시장이 정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합동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은 그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이하 “합동분과위원”이라 한다)에서 호선한다.
 -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합동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합동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소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조례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3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심의에

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위원회 등에서 조사·심의 등의 대상이 된 안건(이하 “대상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대상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상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대상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대상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대상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전문가) ①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국가유산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입안을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계전문가는 시장이 부여한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맡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맡는다.

제9장 시등록문화유산

제40조(등록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59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시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 소유 국가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제41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국가유산이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1조(등록의 신청)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해당 국가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국가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국가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대상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국가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등록 사항 등) 시장과 관할 구청장 및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기술 지도) ① 조례 제60조제3항에서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시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조례 제61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1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2. 조례 제61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3. 조례 제6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4. 조례 제61조제6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5. 조례 제61조제7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6. 조례 제61조제8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반입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제45조(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 ③ 조례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제46조(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조례 제6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 제47조(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시장은 조례 제64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제48조(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신고)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따른다.
- 제50조(국가유산수리의 평가 등) 조례 제58조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51조(보조금)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등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관리·보호·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 ② 시장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지정유산등의 수리나 그 밖에 공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2조(조사원의 신분증)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제53조(위임사무 처리결과 등 제출) 구청장은 조례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지정문화재가”를 “지정국가유산이”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상물 촬영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연유산·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 자연유산법·문화유산법”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법과 문화유산법에 따른 자연유산·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자연유산법·문화유산법”으로 한다.

<별표 1> (제6조 및 제8조 관련)

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

국가유산의 종별	지정기준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1. 건조물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랑·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갈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문서 가. 전적류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고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계통적·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작·고필·묵적·현판·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 패총 또는 사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큰 것

국가유산의 종별	지 정 기 준
2. 서울특별시 기념물	- 유사 이전의 유적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지적·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그 밖의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성지·책체·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자·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 및 그 밖에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고도(옛길)·교지·독·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그 밖에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교육·사회산업에 관한 유적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분묘비 등 분묘비·구택·원지·정전·수석·그 밖에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3. 서울특별시 자연유산	-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류의 서식지 - 저명한 협곡·해협·꽃·급류·심연·폭포·호소 등 - 저명한 해안·하안·도서·그 밖의 경승지 -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 특색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자연·냉광천지 - 동물 - 우리나라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 -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또는 도래지 - 생물·민속·의식주·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번식지 - 우리나라 특유의 축양동물과 그 산지 - 우리나라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 - 식물 - 우리나라 자생 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 -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과 그 생육지·자생지 -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노거수·기형목 -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 -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 식물 또는 생육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 지질·광물 -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 거대한 석회동 또는 저명한 동굴 -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지질 -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 온천 및 냉광천 - 천연보호구역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구역 - 자연현상 관광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국가유산의 종별	지 정 기 준
3.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유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우리나라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및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활에 관한 것 농기구·어구·수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표 2> (제9조 관련)

서울특별시 보호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 분	지 정 기 준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의 보호구역	1. 목조 및 석조건축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사찰건조물인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구역 2. 석탑·전탑 등은 지대석에서 10미터부터 25미터 이내의 구역 3. 석비·부도·석종·석불(건물 내의 안치된 것은 제외한다) 등은 대석의 최돌출점에서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4. 첨성대는 하부 기단에서 5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5. 석빙고는 벽면상부 지면에서 20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6. 석굴은 하부 기단에서 100미터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 7. 마애불은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8. 당간지주·석등·노주·석조 등은 각 물체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사방구역 9. 석교는 교대 및 교각에서 10미터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10. 그 밖의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 각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서울특별시 기념물의 보호구역	1. 성곽 등은 성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성·산성·성내전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벽면하부 기석에서 외향 20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제방은 성곽에 준한다. 4. 왕릉·고분묘 등은 봉토 하단에서 10미터부터 1천미터 이내의 구역 5. 사자·사우자·전묘자·고궁 등은 담장 또는 경계선에서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6.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은 유형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7. 그 밖의 기념물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서울특별시 자연유산의 보호구역	1.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미터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3. 그 밖의 자연유산 보호구역은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보 호 물	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및 그 밖의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동종·석비·불상 등은 종각·비각·불각 3. 그 밖의 국가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5.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1. 보호물이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및 그 밖의 최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외향 5미터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2. 보호물이 석책·철책·위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기석에서 2미터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

<별표 3> (제27조 관련)

촬영요금 및 장소사용료**1. 촬영요금**

구 분 : 극영화·광고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

기본요금 : 2시간 이내 200,000원

초과요금 : 1시간당 50,000원

구 분 : 극영화·광고영화 및 TV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기본요금 : 2시간 이내 100,000원

초과요금 : 1시간당 30,000원

구 분 : 광고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기본요금 : 1시간 및 모델 1명 이내 20,000원

초과요금 : 1시간당 10,000원

모델 1명당 10,000원

2. 장소사용료

구 분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장 소 사 용 면 적 및 요 금	◦ 1,650㎡ 미만 36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 1,650㎡ 이상부터 3,300㎡ 미만 720,000원	
	◦ 3,300㎡ 이상 1,080,000원	

※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 야간은 상기 규정에 의한 요금(초과요금을 포함한다)에 100%를 가산하되 가산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주야간 구분 : 주간시간은 06:00 ~ 18:00, 야간시간은 18:00 ~ 다음날 06:00로 한다.
※ 다만,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정원의 1시간당 요금은 1㎡당 20원으로 한다.
(야간사용료는 요금의 30%를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지정유산(유형 부문) 지정신청서

명칭			수량 (면적)	
크기			규모	
재질			구조·형식	
연대			작가 (건축가)	
소유자 성명	(인)	·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 국가유산 소재지(보관장소)		
내역				
보수내역				
국가유산 현상(現狀)				
신청구분	☐ 시 지정 ☐ 국가 지정			
위 대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 국가유산 사진, 유물취득경위서, 국가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각 1부				

사	진

취득경위서

☐ 명 칭 :

☐ 보관장소 :

☐ 소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취득경위 :

본인은 위 국가유산 취득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시지정유산 지정신청 동의서

☐ 명 칭 :

☐ 수 량 :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위 국가유산과 관련하여 국가유산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민속문화유산
서울특별시 () 지정서
자 연 유 산
문화유산자료

명 칭
수 량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민속문화유산
위 국가유산을 서울특별시 () (으)로 지정합니다.
자 연 유 산
문화유산자료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기 록 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연월일	기 록 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민속문화유산
서울특별시 () 지정서 부록
자 연 유 산
문화유산자료

지정번호	명 칭	수 량
제 호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번 호	명 칭	재 료	구조형식·형태	규 격	수 량	그 밖의 특징

[별지 제4호서식]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서울특별시 () 지정서 발급대장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illegible]

268mm×190mm[인쇄용지(특급) 80g/m²]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시지정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시지정유산	지정종류				
	명칭				
	지정수량				
	지정일				
지정받는 자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위 단체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지정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

시지정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	관 리 단 체				대 상 문 화 재					⑪ 관리 기간	⑫ 지정일	⑬ 발급자
	② 단체명	③ 주 소	대 표 자		⑥ 종별 및 지정 번호	⑦ 명 칭	⑧ 소재지 (보관 장소)	⑨ 수량 /면적 (㎡)	⑩ 소유자			⑭ 발급일
			④ 성명	⑤ 생년월일								

※ 작성요령

- ①란의 발급번호는 지정일자 순으로 적는다.
- ③란의 주소에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명시한다.
- ⑫란의 지정일에는 서울시보에 게재된 고시번호와 일자 등을 병기한다.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갑지)

유형문화유산
기 념 물
민속문화유산
서울특별시 (자연 유 산) 대장
문화유산자료

시지정유산종별			지정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지 정 일			해 제 일		
구 조			형식/형태		
(제)작자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을지)

시지정유산명 : 제 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날 짜	내 용

(병지)

[illegible]

(정지)

[illegible]

(무지)

[illegible]

(기 지)

시지정유산명 : 제 호 () 도면/사진			
제		종	
제		종	

[별지 제8호서식]

시지정유산등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시지정유산등	④ 명칭					
	⑤ 종별			⑥ 지정번호		
	⑦ 도래자생산지					
⑧ 포획(채취·반출) 사유						
⑨ 포획(채취·반출) 부분				⑩ 수 량		
⑪ 포획(채취·반출) 예정 연월일						
⑫ 포획(채취·반출) 방법			⑬ 반출지			
기 술 담 당 자	⑭ 성명			⑮ 생년월일		
	⑯ 주소					
⑰ 재 반 입 여 부						
⑱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연구) 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시지정유산등 (탁본·영인·촬영)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시지정유산	④ 명 칭			
	⑤ 종 별		⑥ 지정번호	
	⑦ 소재지			
⑧ 신 청 사 유				
⑨ 신 청 구 분			⑩ 수 량	
⑪ 작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⑫ 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자	⑬ 성 명		⑭ 주 소	
기술담당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소 요 경 비			⑱ 재 원	
⑲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연구) 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상 유산	명 칭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 보호물				

시 지 정 유 산 의 현상변경 유형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 포획·채취·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방사·위치·추적기부착·혈액·채취·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신고된 것을 포함	[] 건축물·도로·선로·관로·전선·구조물·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 제외)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파기·구덩이·땅파기·흙쌓기 등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수질·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동물·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기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시 등 록 문 화 유 산 의 현상변경 유형 (※ 조례 제 65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 한정함)	[] 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 산으로 등록할 때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질·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시 등 록 문 화 유 산 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동산에 속하는 시 등 록 문 화 유 산 을 수리하거나 보존하는 행위

(뒤쪽)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 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 수	소 요 경 비	원	재원
	완 료	그 밖 의 사 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호·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수 수 료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없 음
	3. 현장 사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 상 유 산	명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 보호물			

당초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수	
	완료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 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남 ☐ 여 ☐)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유 산 의 명		⑤ 종별		⑥ 지정(등록) 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전화번호 :)						
관 리 자	신	⑨ 성 명			⑩ 생년월일	(남 ☐ 여 ☐)	
		⑪ 주 소					
	구	⑫ 성 명			⑬ 생년월일	(남 ☐ 여 ☐)	
		⑭ 주 소					
⑮ 사 유				⑮(선임·해임) 연 월 일			
⑰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호·제61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제44조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 소유자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 일
① 유 산 의 칭 명		② 종 별		③ 지 정(등록) 번 호		④ 수 량		
⑤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⑥ 보 호 물·보 호 구 역								
소 유 자	변경 후	⑦ 성 명		⑧ 생년월일	(남 □ 여 □)	⑨ 직 업		
		⑩ 주 소	(전화번호 :)					
	변경 전	⑪ 성 명		⑫ 생년월일	(남 □ 여 □)	⑬ 직 업		
		⑭ 주 소	(전화번호 :)					
⑮ 변 경 사 유				⑯ 변경연월일				
⑰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호·제61조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제44조제2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변경 후) (변경 전)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 () 변경신고서 소재지·보관장소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남 ☐ 여 ☐)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유 산 의 명 칭		⑤ 종별		⑥ 지정(등록) 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⑨ 보 호 구 역		⑩ 지목		⑪ 지적			
⑫ 변 경 사 유				⑬ 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	⑭ 변경 후						
	⑮ 변경 전						
⑯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3호·제44조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 () 신고서 결 실 유 실 도 난 해 손				처리기간
				2 일
신 고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남 ☐ 여 ☐)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유 산 의 명 칭		⑤ 지정(등록)종별 및 번호	제 호	
⑥ 소 재 지 또는 보 관 장 소		⑦ 수 량		
⑧ 보 호 물 명 칭				
신 고 내 용	⑨ 사고연월일			
	⑩ 사고내용			
	⑪ 사고경위			
	⑫ 조치내용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6호·제61조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제44조제4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시지정유산등 재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시지정유산등의 명 칭		⑤ 종별		⑥ 지정번호		⑦ 수량
반출허가내용	⑧ 문서번호			⑨ 허가연월일		
	⑩ 허가조건					
⑪ 반출입 연월일	반 출			반 입		
반출입담당자	⑫ 성 명			⑬ 생년월일		
	⑭ 주 소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	⑮ 반 출 전					
	⑯ 반 입 후					
⑰ 시 지 정 유 산 현 황						
⑱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처 리 기 간
						2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남 ☐ 여 ☐)		
	③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유 산	④ 명 칭		⑤ 종별		⑥ 지정 (등록)번호	
	⑦ 소재지 (보관장소)					
⑧ 보호물·보호구역						
⑨ 공 사 내 용	⑩ 명 칭					
	⑪ 내 용					
⑫ 착 공 연 월 일			⑬ 준공(예정)연월일			
⑭ 허가·명령연월일			⑮ 허가명령의 내용			
⑯ 공 사 담 당 자			⑰ 공 사 금 액	원		
⑱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8호·제61조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6호·제44조제5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 완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1. 공사실시 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시지정유산등 시외반출 신고서						처리기간	
						30 일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시지정유산등의 명 칭		⑤ 증별		⑥ 지정번호		⑦ 수 량	
⑧ 규 격				⑨ 보관장소			
⑩ 반 출 목 적							
⑪ 반출대상 시·도				⑫ 보험 방법			
⑬ 반입예정 연월일				⑭ 반입예정 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⑮ 성 명						
	⑮ 주 소						
⑰ 반출증 보호방법							
⑱ 반출에 관한 협 약 내 용							
⑲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소유자 동의서 1부 2. 시외반출 신고 목록 1부 3. 그 밖의 서류(보험가입증서, 전시기획서, 반출협약서 등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감지)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 (재)반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남 ☐ 여 ☐)		
	③ 주 소	(전화 :)				
④ 유 산 의 명 칭		⑤ 종 류		⑥ 지정(등록)번호	⑦ 수 량	
반출허가내용	⑧ 문서번호		⑨ 허가연월일			
	⑩ 허가조건	(전화 :)				
⑪ 반 출·반 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	⑫ 성 명		⑬ 생년월일			
	⑭ 주 소	(전화 :)				
보 관 장 소	⑯ 반 출 전					
	⑰ 반 입 후					
⑱ 유 산 현 황						
⑲ 그 밖의 사 항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9호·제61조 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제44조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지)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 시외반출 신고 목록		
① 지 정 (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⑤ 보 관 장 소		
① 지 정 (등 록) 번 호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의 사진
명 칭		
수 량		
④ 규 격		
⑤ 보 관 장 소		

[별지 제20호서식]

시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전자우편 (e-mail) 주소	
대 상 시지정유산등	⑥명 칭		⑦지정종별 및 번호	
⑧소 재 지	(전화 :)			
공개제한 사 항	⑨제 한 사유			
	⑩제 한 기간			
	⑪제 한 지역			
출입허가 신 청	⑫출입목적			
	⑬출입기간		⑭출 입 자	
	⑮출입지역			
⑯그 밖의 사 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1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연구)계획서 등 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시 소유 국가유산등 촬영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인 적 사 항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팩 스 번 호		
전자우편(e-mail)주소					
국가유산 시 설 명					
촬 영 응 도			촬 영 일 시	(~)	
촬 영 인 원 (모델 포함)			촬 영 장 비 (소품 포함)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을 촬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서류	1. 해당 촬영 시나리오 및 촬영계획서 각 1부				수수료
	2. 촬영 국가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대책 1부				없 음
3. 국가유산 보존 준수 서약서 1부					
4. 신청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시 소유 국가유산등 촬영 허가서					
허가내용	사 용 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촬영일시			촬영시간	
	국가유산 시 설 명			촬영인원	
	촬영내용			촬영장비	
	사 용 료	일금 (₩)			
허가조건 (제한내용)	1. 국가유산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허가받은 차량을 제외하고,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우마차마필 또는 그 밖의 동물 반입을 금함 5. 인공강우인공강설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의 반입을 금함 6. 그 밖의 국가유산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7.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을 금함 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지 또는 허가취소될 수 있음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에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시 소유 국가유산등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e-mail) 주소	
행사장소 (사용면적, m ²)						
행사목적 및 필요성						
행사내용						
행사일시/준비일 /철수일시						
진행 및 참가자 인원						
행사도구 및 장비(소품포함)						
기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용장소의 도면 1부 2. 행사추진 계획서 1부 3.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계획서 (국가유산 및 시설 보호대책 포함) 1부 4.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5. 그 밖의 참고서류 1부 6. 국가유산보존 준수서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시 소유 국가유산등 장소사용 허가서				
신청인 성명		행사명		
허가내용	행사일시		행사장소 (사용면적)	
	행사내용			
	진행 및 참여인원		진행장비 (소품포함)	
	행사시간		사용료	
허가조건 (제한사항)	1. 국가유산을 훼손하거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화기취사도구 반입금지 및 화기취사 행위는 절대 금함 3. 관람객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국가유산 및 관리시설의 훼손 및 손상행위를 금함 5. 행사질서 및 행사장소 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함 6. 허가받은 차량 및 장비, 도구 이외의 반입을 금함 7.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문화유적지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국가유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이 중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기 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에 준수에 철자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시 소유 국가유산등 운영위탁신청서			처리기간 180일
법인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 -)	
소재지			
대표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희망시설명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대표자 증명서류(단체인 경우) 2. 운영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단체인 경우)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시 소유 국가유산등 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80일
법인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 표 자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기 간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시 설 명						
그 밖의 사항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 서울특별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 기간을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 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대표자 증빙서류(단체인 경우) 2. 운영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단체인 경우)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NO.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조사원증

사진
3cm×4cm
(반명함판)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급명 :
일 :

위의 사람은 국가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인

↑
1.5cm
↓

↑

3.0
cm

↓

↑
1.5cm
↓

←0.5cm→ ← 2.5cm → ←0.5cm→ ← 4.5cm → ←0.5cm→

86mm×60mm[보존용지(1종) 120g/㎡]

- 72 -

[별지 제28호서식]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년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소 (전화번호:)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	명칭				
	대상물 구분		용 도	수 량	
	소재지(보관장소)				
	구조 및 규모				
	연 혁				
	소 유 자 (또는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등록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유산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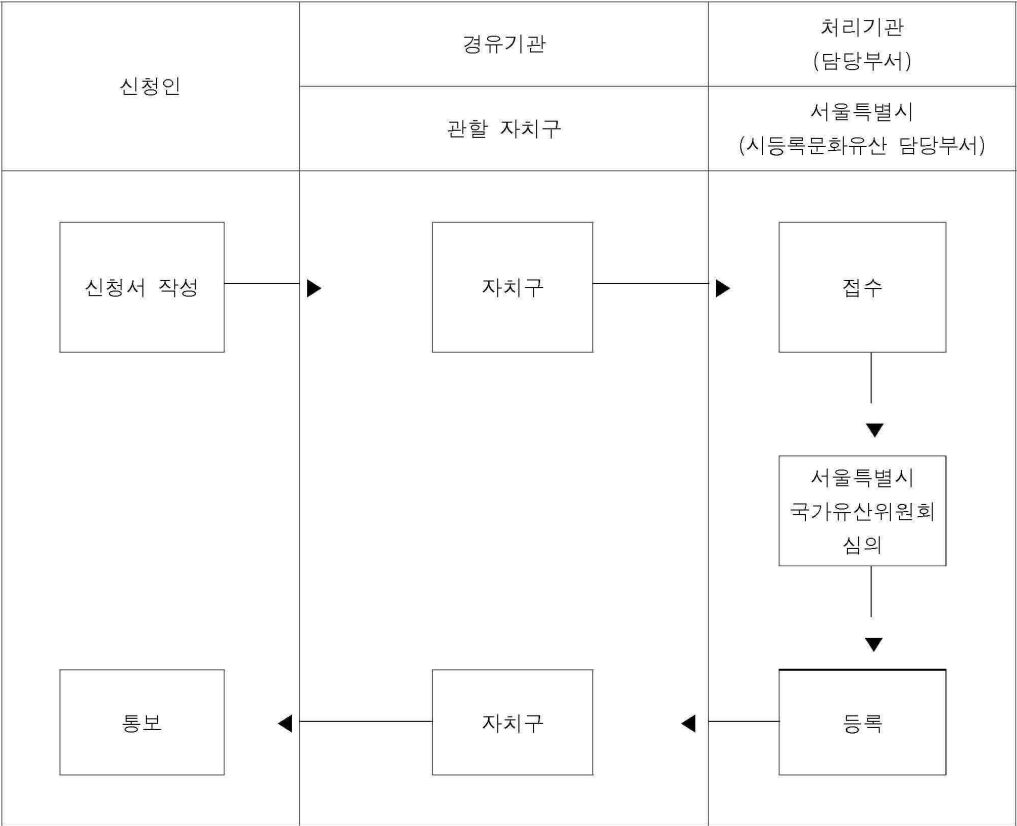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상 국가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대상 국가유산의 사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대상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국가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대장

(5쪽 중 제1쪽)

등 록 번 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등 록 일		말 소 일
구 조		형 식 / 형 태
(제) 작 자		규 격 / 크 기
수 량 / 면 적		연 대 / 시 대
소 재 지 / 보 관 장 소		
보 호 물		
부 속 (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남 ☐ 여 ☐)	전 화 번 호
관 리 자	주 소	
	성 명 (남 ☐ 여 ☐)	전 화 번 호
관 리 단 체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점 유 자	주 소	
	성 명 (남 ☐ 여 ☐)	전 화 번 호
사 유		
내 용 (연 혁 , 유 래 , 전 설)		
현 황		

210mm×297mm [백상지(80g/㎡)]

(5쪽 중 제2쪽)

시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관리상황(현상변경, 보수·정비 등)	
날 짜	내 용

(5쪽 중 제3쪽)

시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등 록 현황

[illegible]

(5쪽 중 제4쪽)

시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특례적용 현황(건폐율 · 용적률 완화, 국고보조금)

[illegible]

(5쪽 중 제5쪽)

시등록문화유산명 □□□□□ 제 00호 □□□□□

도면 / 사진

제 목		종 류	

제 목		종 류	

[별지 제31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기술 지도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자치구 경유 20일)

신 청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남 ☐ 여 ☐)
	(전화번호:)	

대 상 시등록문화유산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남 ☐ 여 ☐)
	(전화번호:)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재용도	
------------------	--

기술 지도 요청사유	
------------	--

기술 지도 요청 내용	
-------------	--

그 밖의 참고사항	
-----------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등록문화유산의 기술 지도를 요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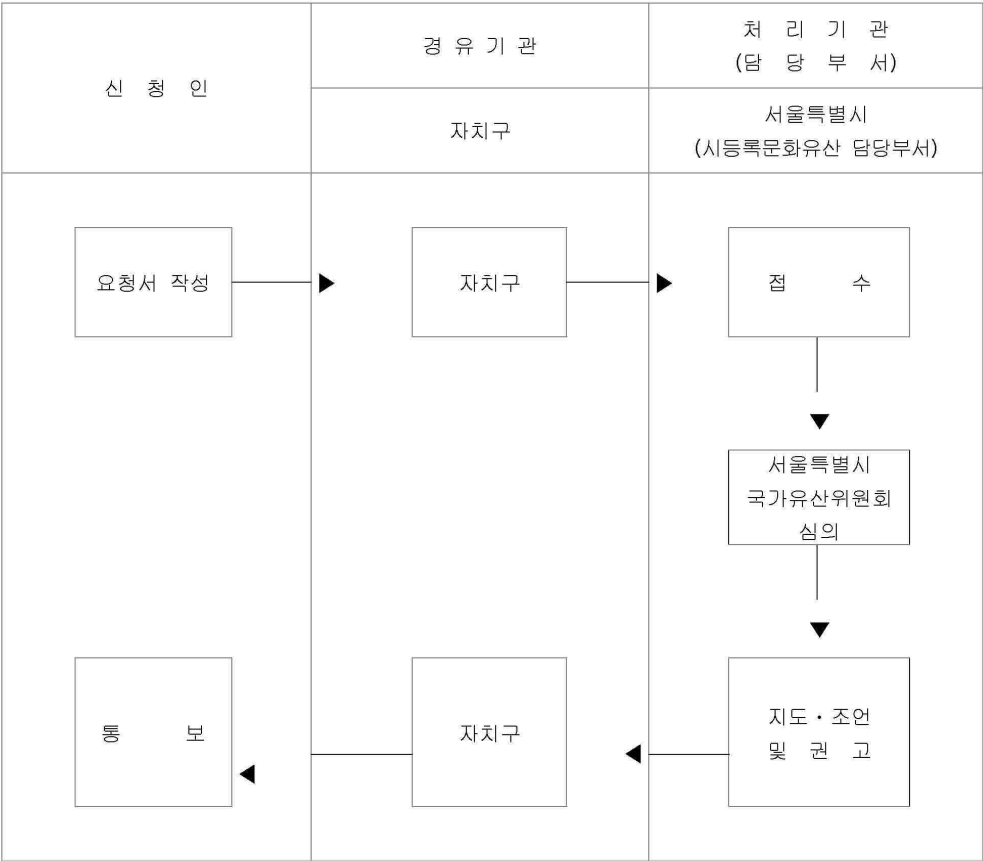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수수료
	2. 대상 시등록문화유산 수리내역서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자치구 경우 2일)
------	------	------	-------------------

신 고 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시등록문화유산	명 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수량(연건평)
	소 재 지	

현상변경 사유
현상변경 등의 부분
현상변경 등의 내용 및 실시 방법

이전 후의 소재지
(시등록문화유산을 이전한 경우)

소 유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
	주 소 (전화번호:)	

관 리 단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시 행 자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착공및준공예정 연 월 일	착 공	
	준 공	

소 요 경 비	재 원
그 밖의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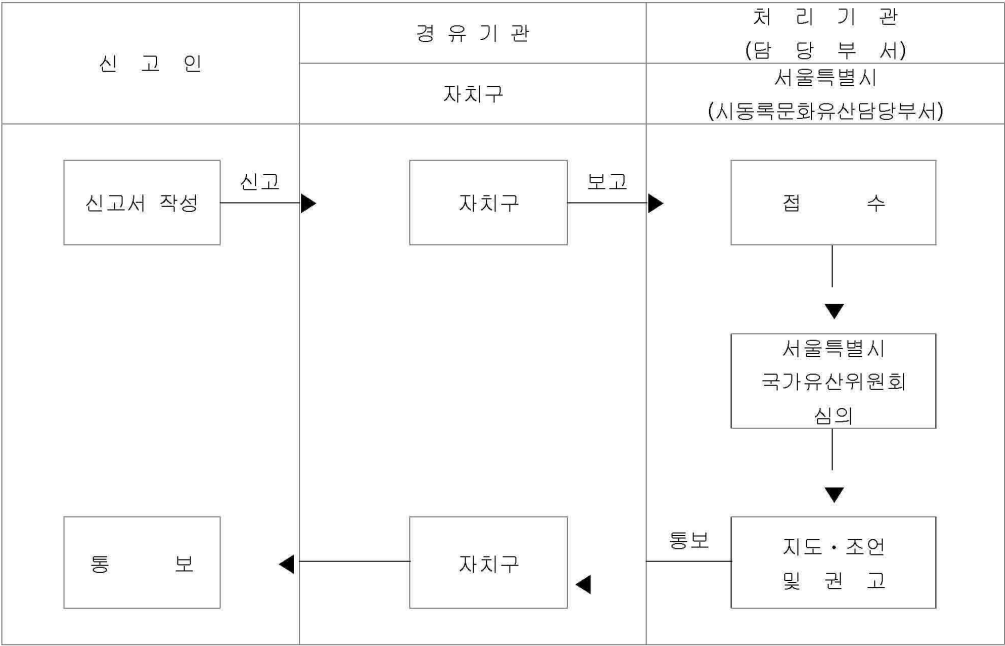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수수료 없 음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국가유산 전체 사진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남 ☐ 여 <input 3"="" type="checkbox/>)</td></tr><tr><td>주 소</td><td colspan="/>		
대상 유산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국가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62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지정(등록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조례)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62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61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시지정(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

허가받는 자	성 명 (남 ☐ 여 ☐)
	주 소
대상유산	종 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명 칭
	소재지
허가내용	개 요
	위 치
	기허가 내 용
	변경허가 내용
허가기간	당초기간
	변경기간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62조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 제62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61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 시등록문화유산 제 호

서울특별시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9조에 따라 위 국가유산을
서울특별시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작 인

210mm×297mm [백상지(150g/㎡)]

(뒤쪽)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교부 또는 재교부 연월일	기록자
(변 경 사 항)				
소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변 경 연 월 일	기록자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1조에 따라 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2. 시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80g/m²)]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등이 시행(' 24. 5. 17.)되어 문화재가 국가유산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함

나. 부칙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문화재 용어가 포함된 다른 규칙을 개정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652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제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서울특별시 누리집”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를 “(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무형문화재가”를 “무형유산이”로 한다.

제4조 중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무형문화재 또는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시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시무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등”을 “시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를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등”을 “시무형유산등”으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무형문화재등”을 “시무형유산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을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및” 을 “또는”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등” 을 “시무형유산등” 으로, “무형문화재” 를 “무형유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무형문화재등” 을 “시무형유산등” 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등” 을 각각 “시무형유산등” 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대장)” 을 “(시무형유산등 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시무형문화재등의 대장 은” 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 유산등의 대장은” 으로 한다.

제15조 중 “하는” 을 “실시하는” 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시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 를 “(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로 한다.

제17조 중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대표자를 포함한다),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을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 또는” 으로, “또는 주소” 를 “등” 으로 한다.

제18조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 경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에 추진 중인 전수교육에 대한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월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2항 중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우수 이수자”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22조 중 “시무형문화재” 를 “시무형유산” 으로, “따른” 을 “따른 전수장학생”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을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무형유산 명칭	
개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구 의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구 분	☐ 보유자 ☐ 전승교육사	
	종 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 청 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추천받는 사 람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기능·예능 (이수 기능·예능:)		
경 력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		
	○ 보유자·보유단체 공개행사 참여 실적: 회		
	기능·예능 공개실적 ○ 기타 대외행사 실적: 회		
	※ 국내공연(또는 전시), 해외공연(또는 전시),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 적 등을 적습니다.		
	이수사항 년 월 일 이수증 받음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8. 18.>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cm × 4.5cm

(모자를 벗은 상
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000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66mm×380mm[백상지(150g/㎡)]

■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2. 8. 18.>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cm×4.5cm

(모자를 벗은 상
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000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우리 전통문
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
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66mm×380mm[백상지(150g/㎡)]

■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2. 8. 18.>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성 명:

생 년 월 일:

인 정 일 자:

사 진

3.5cm × 4.5cm

(모자를 벗은 상
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귀하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000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66mm×380mm[백상지(150g/㎡)]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8. 18.>

제 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보유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인 정 일 자:

귀 단체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000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66mm×380mm[백상지(150g/㎡)]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구 분	[] 보유자	성명 (보유단체명)	생년월일
	[] 보유단체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보유단체의 경우)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	주소 (전화번호:)	
재 교 부 사 유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사진(3.5cm×4.5cm) 1장

※ 신분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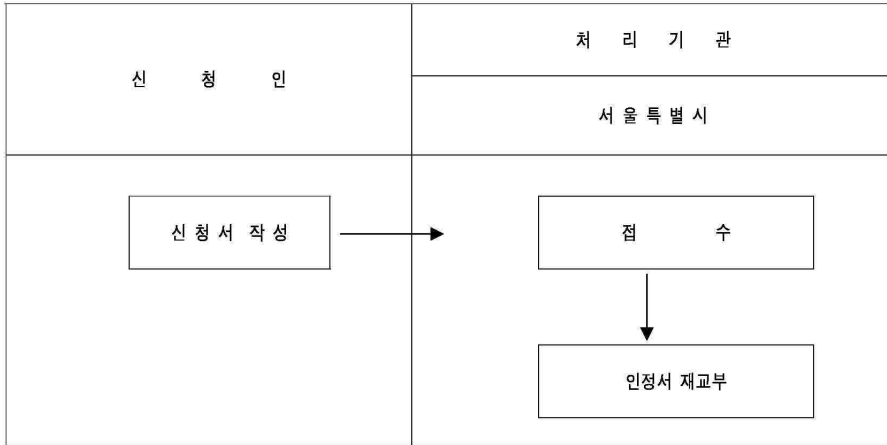
※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교부대상

교부 번호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제 호)	보유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주 소	교 부 구 분	교 부 연월일	교부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8. 18.>

(앞쪽)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								
지정 기준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 중 선택)							구 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개인	단체
무형유산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지 정 일			해 제 일			관리번호		
개 요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서울특별시(긴급보호) 무형유산 명칭 :

전 승 자 목 록

전승자 구분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인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기능 · 예능	주 소	전화번호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보유자·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앞쪽)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	제 호 (명칭)			지정 연월일
보유자성명 (보유단체명)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	
명	명	명	명	
조사 결과	기능·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전수교육 경비			
	전승활동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증명서류 사본(전수생 등록 현황, 전수 교육 실적 등)
- 2. 현황 사진(전승 현황, 전승 여건 등)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세부 점검 내용	
기능·에너지 현황	
전수교육 현황	
전송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	
전송활동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조사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서울특별시

60mm×90mm[백상지(150g/㎡)]

(뒤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수신처: 서울특별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8. 18.>

(앞쪽)

서울특별시무형유산(전승자¹⁾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

신 고 인 (본 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 칭		
변경 사유		변경 연월일
변경 내용	신	
	구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 성명,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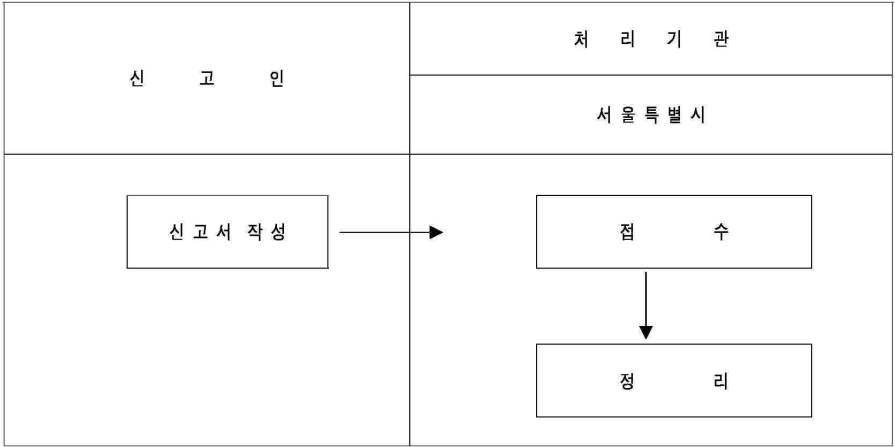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전수교육 세부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수교육 증빙자료 (사진 등)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3호의2서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월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 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보유단체명)	(서명 또는 인)
월 전수교육 세부실적	1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2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3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4주 차	- 일시(시간) : - 장 소 : - 교육내용 : - 교육방법 : - 지 도 자 :			
전수교육 증빙자료 (사진 등)	1주 차	2주 차	3주 차	4주 차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월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빙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빙자료(사진 등)란에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교육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추천서

추천 대상자	사진 (3.5×4.5)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수이력	전수교육 주제		
	이수증 발급일		
실적	전수교육 참여		
	전승활동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의 우수 이수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1매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	--

작성방법

"실적"란에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하되,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8. 18.>

제 호

이 수 증

서울특별시무형유산 ○○○ (이수 기능·예능:)

성 명:

생 년 월 일:

전수교육 주체:

발 급 일:

위 사람은 위의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기능(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 [백상지(150g/㎡)]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8. 18.>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 훼손된 이수증은 반납 []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			
전수교육 주체		심사대상자	
심사 일시	년 월 일	심사장소	
심사 의견			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교란에 평점을 적습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8. 18.>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명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시무형유산 전수경력	보유자성명		전수 기간	개월
		보유단체명			
	무형유산 분야전수 관계경력	기능·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cm × 4.5cm) 1장(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일괄 개정함.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수시 점검 근거 규정과 월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식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함.
- 나. 전수교육 실시 여부 수시 점검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18조)
- 다. 월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3호의2서식)

◆ 서울특별시규칙 제4653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제2조제1호 중 “소요되는 자금” 을 “소요되는 자금”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다음날 (공휴일)” 을 “다음날(공휴일)” 로, “대여 받은” 을 “대여받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제10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때에는 10일” 을 “때에는 1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후단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의” 를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의” 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폐업중인 자” 를 “폐업 중인 자” 로, “서울특별시” 를 “시” 로, “폐업중인 자는” 을 “폐업 중인 자는”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이내에” 를 “기간 내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경영안정자금 :” 을 “경영안정자금: 3월”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숙박사업 :” 을 “숙박사업:”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중소기업공동사업 :” 을 “중소기업공

동사업:”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시장재개발사업 : 3년.” 을 “시장재개발사업: 3년.”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후단 중 “임시시장설치사업” 을 “임시시장 설치사업” 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사업 :” 을 “사업:” 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제16조의 대출대상자” 를 “때에는 제16조의 대출대상자”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정한 제” 를 “정한” 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재해중소기업” 을 “재해중소기업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 받고자” 를 “연장받고자”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을 “제3항” 으로, “신청기업에게” 를 “신청기업에” 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한한다” 를 “한정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출목적범위” 를 “대출목적 범위”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한한다” 를 “한정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받아” 를 “지원받아” 로, “현황을 연2회” 를 “현황을 연 2회” 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목적외” 를 “목적 외” 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따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상환 조건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상환조건(7년) 근거 마련 (제9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인용 조례 현행화,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654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 을 “별표 1”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 를 “별표 2”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되고” 를 “말고” 로, “된다” 를 “말는다” 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시임명” 을 “일시적으로 임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괄입찰공사” 를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로 한다.

제5조 중 “공무원이 되고” 를 “공무원이 말고,” 로, “된다” 를 “말는다” 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바목 중 “인·허가” 를 “인허가”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0억원” 을 “20억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소위원회는 심의요청 내용이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서면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심의 요청” 을 “심의요청” 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그 밖에”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0일” 을 “15일” 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일괄입찰 공사” 를 “일괄입찰공사” 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산파일” 을 “전자파일” 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별표1” 을 “별표 1” 로, “관계전문기관” 을 “관계 전문기관” 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3” 을 “별표 3” 으로 한다.

제30조 중 “7일” 을 “15일” 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사후평가” 를 “이행관리 확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클레임” 을 “이의제기”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그 밖에”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사후평가는 소위원장이 평가단” 을 “이행관리 확인은 소위원장이 확인단” 으로, “평가방법” 을 “확인방법” 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평가결과” 를 각각 “확인 결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3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22조”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술제안입찰공사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도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와 동일하게 분과위원장이 소위원회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운영토록 하는 한편, 전기·기계·조경 분야 설계심의 대상 기준을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현행화함.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공포(' 24.3.15.)에 따른 설계심의 사후평가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괄입찰공사와 동일하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심의 시에도 분과위원장이 소위원회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운영토록 함(제4조제3항)
- 나. 시행규칙 개정(' 01.8.30.) 시 책정된 전기·기계·조경 분야 설계심의 기준을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변경함(제6조제2항제6호)
- 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공포(' 24.3.15.)에 따라 설계심의 사후평가 명칭을 설계심의 이행관리 확인으로 변경함(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655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무부서(제5조 관련)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1	자연 재난	풍수해(태풍·호우)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2		지진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3		대형화산폭발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4		가뭄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5		산사태·급경사지	정원도시국	산지방재과
6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7		한파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8		폭염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9		풍수해(대설)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10		대규모 황사 발생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1		조류 대발생(녹조)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2	사회 재난	산불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13		화학물질 유출사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4		대규모 수질오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5		공동구 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16		댐붕괴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17		도시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8		고속철도 대형사고	교통실	도시철도과
19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1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기술정책관	지역건축안전센터
22		가축질병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23		감염병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4		정보통신 사고	디지털도시국	정보통신과
25		전력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6		원유수급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27		보건의료 마비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8		식·용수 사고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29		육상화물운송 마비	교통실	물류정책과
30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31	사회 재난	초미세먼지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2		도로터널 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33		도시가스 수급분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4		한강수난사고	미래한강본부	한강여가사업부
35		위험물 사고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36		농수산물 유통마비	민생노동국	농수산물유통과
37		산업시설생산 마비	경제실	산업입지과
38		생활필수품 유통 마비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39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0		소각시설 마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4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2		버스 총파업	교통실	버스정책과
43		택시 총파업	교통실	택시정책과
44		지하철 파업	교통실	도시철도과
45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시설국)
46		지하철 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국)
47		물재생센터 마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48		지반침하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49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재난안전실	도로시설과
50		한강교량 대형사고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
51		병원시설 대형사고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52		대형 상수도 누수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53		상수도공사장 붕괴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54		대테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55		정전 승강기 사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연번	재난분야	재난유형	수습주무부서	
			실·본부·국(통제관)	과(담당관)
56		정보서비스 마비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센터
57		아파트공사장 붕괴	주택실	주거정비과
58		시청사 마비	행정국	총무과
59		열공급 중단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60		다중주택 인파사고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예방과

※ 소방재난본부가 수습주무부서인 재난의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해당 재난 발생 시설 등과 관련된 실·본부·국에서 통제관, 담당관(상황총괄반 실무반장) 역할 수행 가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류 대발생(독조)” 재난유형 신설, “해외재난” 재난유형 및 “원전안전(방사능)” 재난유형 폐지(별표 2)

나. 재난수습 주무부서 4급 부서단위 재정비(별표 2)

◆ 서울특별시규칙 제465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제1항”을 “제6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 중 “서류:”를 각각 “서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른 서류: 별지 제46호서식의 미해산(미청산) 정비조합 관리대장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미해산(미청산) 정비조합 관리대장

사업명	(위치)						
조합명	정비사업 조합						
대표자 (조합장/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사무실주소	(연락처)					
임원(청산인) 구성	성명 (직책)	연락처			성명 (직책)	연락처	
준공일		이전고시일		해산일 (해산총회일)		청산종결일	
잔여자금			월평균사용금액 / 주요사용내역				
미해산(미청산) 사유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요약							
실태조사	조사일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종합의견							

※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은 구체적인 해산·청산 종료일(예정일) 및 소송현황을 포함하여 작성

※ 실태조사는 조합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조합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실시

제출서류	1.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자료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2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미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 제출 서식을 신설함(제32조제8호, 별지 제46호서식)
- 나.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함(제2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57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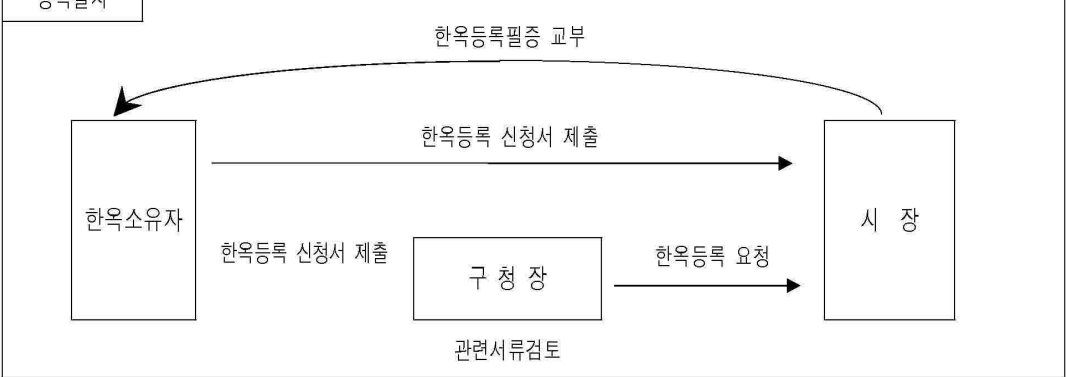
제7조제1항 중 “구청장” 을 “시장 또는 구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을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사용승인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공사 예정일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내 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신 축	☐ 개 축(☐ 전체 ☐ 부분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			건축물대장	수수료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없음	
등록절차	 <pre>graph LR A[한옥소유자] --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 --> B[시 장] B -- "한옥등록 요청" --> C[구 청 장] C -- "관련서류검토" --> B B -- "한옥등록필증 교부" --> A</pr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한옥등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등록 신청 시 구청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

나. 별지 제4호서식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658호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제명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해야 한다” 를 “사용할 것”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협의하여야 한다” 를 “협의할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지하여야 한다” 를 “유지할 것”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를 “판매행위 금지”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행위를 할 수 없다” 를 “행위 금지” 로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할 것
6. 음향은 허가된 기준 내에서 사용할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4.3.26.)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운초록띠광장'을 '세운광장'으로 현행화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함(제명, 제1조 및 제2조)

[예 규]

◆ 서울특별시에규 제737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8월 5일

제2조제1호 중 “(발주기관)을” 을 “(발주기관)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으로, “2-다에서 명시한 “공사 계약특수조건”” 을 “2-마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1-가” 를 각각 “1-가-1)” 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2-나” 를 “1-나-2)” 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마” 를 “1-나-5)” 로, “부적합하여” 를 “적합하지 않아”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4-가-1)” 을 “1-라-1)-가)”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하서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6-가” 를 “5-가, 나” 로 한다.

제14조 중 “1-나” 를 “1-가-2)” 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9에” 를 “11에” 로, “피해에 사전대비 또는 관리하여야” 를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0절” 을 “제11절”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밀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를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9절 10” 을 “제5절 1-사”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1절” 을 “제12절” 로 한다.

제20조의6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 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제12절” 을 “제10절” 로 한다.

제24조제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굴삭기” 를 각각 “굴착기” 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순위

우선 순위	구분	대상
1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인기업
3	여성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4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5	그밖의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
6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중기업

[별표 2] 기본사항 10대 항목 세부기준

1. 작업원 안전모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준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준용

3. 개구부 관리철저(난간 및 방망·덮개·폭목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준용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상단에 자재적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준용

5. 가설통로 설치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 임의 철거 불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준용

6.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준용

7. 작업장 조도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준용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준용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설치, 및 이동식비계 스톱퍼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준용

10.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준수(작업허가제 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 측정, 출입자통제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인원의 점검) 준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준용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설공사 부실시공 발생 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회피, 재시공 조치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고 발생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공사장 종합관리책임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 법령 및 상위 예규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1차적인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부여토록 하는 근거 신설(제24조제4항 신설)

나.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항 및 별표 개정

(제18조, 제26조, 별표 1, 별표 2)

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라. 기타 조항 정비(제2조, 제8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의6)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